

청주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나51179, 2023나51186(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장비수리비]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나51179, 2023나51186(병합)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1가소13299, 2021가소138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성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용섭

변론종결 2024. 4. 19.

판결선고 2024. 6. 28.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1가소13299, 2021가소13800 (병합)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2,344,994원 및 그중 8,479,994원에 대하여는 2021. 11. 16.부터 2023.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13,865,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2023나51179(2021가소13299): 피고는 원고에게 14,580,4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023나51186(2021가소13800): 피고는 원고에게 13,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장비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제1장비’라 한다)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매매대금은 피고가 위 제1장비를 담보로 대출받는 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0.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제1장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C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에게 2017. 6. 20. 7,600만 원, 2017. 6. 23. 300만 원, 2017. 7. 3. 2,000만 원 합계 9,9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후 2017. 7. 20.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를 합의해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담보를 제1장비에서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제2장비'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대신 E 또는 그의 배우자 D(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장비를 다시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 그 매매대금은 E 등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D은 2017. 7. 2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7. 7. 27. C에 107,479,994원을 대위변제하여(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부 소멸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23나51179(2021가소13299)호 사건에 관하여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제2매매에 따른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07,479,994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07,479,994원에서 원고가 그와 피고 사이의 제1매매가 합의해제 됨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99,000,000원을 제하고 구하는 잔액 8,479,994원(= 107,479,994원 -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피고가 제1장비를 담보로 하여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7. 7. 20.경 피고의 배우자가 위 제1장비 구입을 반대하고 청주지역 폭우에 따른 차량 수리 지연에 따라 04년식 차량인 제2장비로 담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② 피고는 제1장비를 담보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은 2017. 6. 20. 원고에게 6,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인 2017. 6. 23. 300만 원, 2017. 7. 3.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9,9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송금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1장비를 담보로 대출받는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20. 이 사건 대출금 중 1회 상환분인 3,508,499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8,4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0.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중 1회 상환분에 해당하는 3,508,499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오래전부터 돈거래를 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중 일부 변제로 위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생각될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이나 다른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한 2017. 7. 20. 이후 그 반환을 구하는 2022. 4.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4년 9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이나 관련 이자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508,499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23나51186(2021가소13800)호 사건에 관하여

1) 수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장비수리내역 거래명세서: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1)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거래명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0.부터 2019. 3. 12.까지 피고의 의뢰로 건설기계 호퍼망교환 등 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수리비 합계 13,865,000원[= 전진37 호퍼망교환 등 800,000원 + 전진37 수직아웃드리커셀 등 2,660,000원 + 전진37 약품흡입모터(자재비포함) 1,500,000원 + 21m 엔진미미다이탈부착공임 등 3,475,000원 + 21m 배선수리공임 700,000원 + 21m 엔진수리공임 등 850,000원 + 전진37 아웃드리커스실린더셀 등 800,000원 + 전진37 1단붐실린더탈부착공임 등 1,880,000원 + 전진37 타이어(5개) 1,200,000원, 이하 ‘이 사건 장비수리비’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수리비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수리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에는 이 사건 장비수리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장비수리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0674호로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2019. 3. 28.경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제2장비를 수리해야 G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고 그 수리비를 2,5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500만 원은 2019. 3. 28.경 이후의 제2장비 수리비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장비수리비는 2018. 11. 20.부터 2019. 3. 12.까지의 제2장비 및 21m 기계에 관한 장비수리비에 해당하므로, 위 2,500만 원에 이 사건 장비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수리비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344,994원[= 부당이득금 8,479,994원 + 장비수리비 13,865,000원] 및 그중 8,479,994원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2021가소13299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1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나머지 13,865,000원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2021가소13800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박성준, 판사 이효선

1)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21가소1388 사건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1호증 거래명세서의

서명은 본인 서명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